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3-14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144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1.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장
3. [redacted]군수
4.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5. [redacted]시장
6. [redacted]시장
7. [redacted]군수
8.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redacted]구청장이 2014. 9. 5. 한 재산세 40,801,280원의 부과처분 중



39,183,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피고 ■■■시장이 2014. 9. 5. 한 재산세 5,565,790원의 부과처분 중 5,345,10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 피고 ■■■군수가 2014. 9. 5. 한 재산세 2,760,890원의 부과처분 중 2,651,42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라. 피고 ■■■광역시 ■■■구청장이 2014. 9. 4. 한 재산세 2,423,880원의 부과처분 중
2,327,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마. 피고 ■■■시장이 2014. 9. 5. 한 재산세 1,589,370원의 부과처분 중 1,526,35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바. 피고 ■■■시장이 2014. 9. 3. 한 재산세 755,740원의 부과처분 중 72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사. 피고 ■■■군수가 2014. 9. 10. 한 재산세 612,730원의 부과처분 중 588,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아. 피고 ■■■군수가 2014. 9. 5. 한 재산세 305,830원의 부과처분 중 293,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 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4년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주요주주는 ■■■(26.15%), ■■■공사(20.47%), ■■■단체(합계 7.93%)인데, 위 지방자치단체에는 ■■■시(3.34%), ■■■도(1.02%), ■■■광역시(0.57%), ■■■광역시(0.55%), ■■■도(0.49%), ■■■광역시(0.35%), ■■■도(0.34%), ■■■광역시(0.32%), ■■■광역시(0.28%), ■■■북도(0.26%), ■■■시(0.22%), ■■■남도(0.16%), ■■■도(0.04%)가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들 소속 시·군 조례에 따른 재산세 감면

피고 ■■■구청장은 구 ■■■광역시 ■■■구세 감면조례(2012. 2. 22. ■■■광역시 ■■■구 조례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피고 ■■■시장은 구 ■■■시세 감면조례(2012. 5. 24. ■■■남도 ■■■시 조례 제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군수는 구 ■■■군 군세 감면조례(2012. 5. 10. ■■■남도 ■■■군 조례 제2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광역시 ■■■구청장은 구 ■■■광역시 ■■■구세 감면조례(2012. 5. 1. ■■■광역시 ■■■구 조례 제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피고 ■■■시장은 구 ■■■시 시세 감면조례(2012. 5. 9. ■■■도 ■■■시 조례 제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시장은 구 ■■■시 시세 감면조례(2012. 3. 30. ■■■도 ■■■시 조례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



조에 따라, 피고 ■■■군수는 구 ■■■군 군세 감면조례(2012. 3. 13. ■■■도 ■■■군 조례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군수는 구 ■■■군 군세 감면조례(2014. 8. 8. 조례 제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위 각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의 각 재산세 부과 처분

피고들은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는 각 관할구역 소재 토지에 관하여 이전과 달리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주문 기재 각 2014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4. 12. 2.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마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함

지방자치단체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련부처 협의 및 국무총리 승인이 지체되어 납입이 지연된 것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라는 문언은 반드시 설립시의 최초 자본금 납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1986년 말경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등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설립목적인 천연가스공급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위 문언을 당해 법인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최초 자본금을 납입한 경우로 해석한 것은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부당한 축소해석이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제1, 2항과 달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만을 요건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함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에 따라 원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는 문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과 대비하기 위한 표현일 뿐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3) 불복범위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그 처분금액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감면비율인 100분의 50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비율인 7.93%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제3장), '지방공단'(제4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제4장의2)을 규정하면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대하여 제77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의무는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시에 이루어진 법인뿐 아니라,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출자법인을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그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33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가) 다툼 없는 사실관계,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된 한국가스공사법(이하 '구 한국가스공사법'이라 한다)은, 원고를 법인으로 설립하고(제2조), 자본금을 2천억 원으로 하되(제4조 제1항),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하였다(제4조 제2항).

(2) 원고는 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2014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원고의 주요 주주는 [redacted] (26.86%), [redacted] 공사(24.45%), [redacted] 시 등 [redacted] 단체(합계 7.93%)이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립되었고, 그 후 그 예정된 바에 따라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출자법인이 '상법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 주식이 발행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등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을 오로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 이윤의 창출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41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다.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감면비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한 세액은 이 사건 각 처분금액에서 이 사건 각 처분금액의 100분의 50에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인 7.93%를 곱한 금액인 아래 표 '감면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액수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 원)

처분청	과세대상	처분금액	감면액(=처분액×50%×7.93%)	정당한 세액 (=처분금액-감면액, 10원 미만 버림!)
■ 구청장	■	40,801,280	1,617,770.752	39,183,500
■ 시장	■	5,565,790	220,683.5735	5,345,100



군수		2,760,890	109,469.2885	2,651,420
광역시 구청장		2,423,880	96,106.842	2,327,770
시장		1,589,370	63,018.5205	1,526,350
시장		755,740	29,965.091	725,770
군수		612,730	24,294.7445	588,430
군수		305,830	12,126.1595	293,700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희

 판사 장우석

1)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4

판사 류지원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 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1>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3-14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세 감면조례(2012. 2. 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 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순천시세 감면조례(2012. 5. 24.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 제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영암군 군세 감면조례(2012. 5. 10. 전라남도 영암군 조례 제2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광주광역시 복구세 감면조례(2012. 5. 1. 광주광역시 복구 조례 제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 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광양시 시세 감면조례(2012. 5. 9. 전라남도 광양시 조례 제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2012. 3. 30. 전라남도 목포시 조례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곡성군 군세 감면조례(2012. 3. 13. 전라남도 곡성군 조례 제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2014. 8. 8. 조례 제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한국가스공사법(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되어 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출자는 현금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 ④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업무)

-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 ② 공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행한다.

제31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며, 그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11조(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3-14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30>
1. 천연가스[액화(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부산물)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공사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의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ㆍ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